시민 중심, 으뜸 정읍

정 읍 시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**동진강(정읍) 야생조류 포획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른 이동제한 명령 알림(보고)**

1. 정읍시 축산과-41467(2026. 11. 10.)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-5402(2026. 11. 13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우리시 동진강(정우면 대사리)에서 채취한 야생조류(원앙) 포획 시료에서 고병원성 H5N9이 확인됨에 따라, 야생조류 예찰지역(발생지점 반경 10km)내 가금농가 및 관련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**이동제한 및 소독실시**를 명령합니다.

3. 대상농가에서는 명령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, 임상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,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.

□ 가금농가 이동제한 명령

○ 목 적 : 가금 이동제한을 통한 AI 확산방지 및 가금농가 보호

○ 대 상 :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 모든 가금농가(총 113농가) 및 관련 시설

※ 검출지점 : 정읍시 정우면 대사리 857 ※ 시료채취일 : 2026. 11. 9.

○ 기 간 : **2026. 11. 13. ~ 별도 통보시까지**

※ 예찰지역 방역조치는 2026.11.9.(시료채취일) ~ 11.30. (21일간) 적용

○ 조치사항

-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 가금사육농가 전 두수 이동제한
- 농가 외부차량, 물품, 사람 등 출입 일시제한
- 가금 이동제한 지역 내 소독 및 방역
- 예찰 및 임상검사, 의심축 발생시 즉시 신고

○ 기타사항 : 이동제한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

붙임 1. 야생조류 AI 검사 결과 1부.
2. 이동제한 명령서 1부.
3. 이동제한 내역 1부.
4. 방역조치사항 1부. 끝.

정 읍 시 장

수신자 전국시군구, 전북특별자치도지사(동물방역과장),전북특별자치도지사(동물위생시험소서부지소장),관내 읍면동장, 관내 가금농장, 관내 축산관련 단체장

주무관	김상욱	축산방역팀장	오승수	축산과장	전결 2026. 11. 13. 신기환

협조자

시행 축산과-42029 (2026. 11. 13.) 접수

우 56215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입암면 정읍남로 489, 입암면사무소 총무팀 / www.jeongeup.go.kr

전화번호 063-539-6390 팩스번호 063-539-6537 / kimsuk47@korea.kr / 비공개(6)

청렴 실천! CLEAN 정읍!